

 금융위원회	<h1>보도자료</h1>			 금융감독원
	보도	배포 시	배포	
책 임 자	금융위 지배구조팀장 이 인 옥(02-2100-2520)	담 당 자	윤 세 열 사무관 (02-2100-2521)	
	금감원 비지주그룹감독팀장 김 형 원(02-3145-8204)		박 상 만 수 석 (02-3145-8205)	

제 목 : 롯데금융그룹 금융그룹 감독대상에서 제외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9년 12월 18일 롯데금융그룹을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른 금융그룹 감독대상에서 제외하였음(12월 18일 제 22차 금융위원회 보고)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7개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하여 금융그룹 감독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교보', 'DB', '롯데',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 2019년 11월 27일 롯데손해보험(주) 및 롯데카드(주)(자회사 포함)가 매각으로 '롯데계열'에서 제외(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제외 승인)됨에 따라

○ 롯데카드*(주)는 12월 6일 롯데금융그룹의 금융그룹 감독대상 제외를 신청하였습니다.

* 롯데금융그룹의 대표회사 / 모범규준 상 그룹 대표회사가 감독대상 제외신청 가능

□ 현행 모범규준(붙임 참고)은 여수신업(은행업, 증권업, 저축업, 여전업, 대부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중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복합금융그룹'을 금융그룹 감독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 롯데금융그룹은 롯데손해보험(주) 및 롯데카드(주) 매각으로 여수신업*만 영위하게 되어 '복합금융그룹'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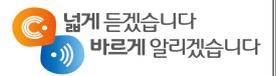
* 롯데캐피탈(해외 자회사 포함), 롯데오토리스, 롯데엑셀러레이터

-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신청서류 심사 등을 거쳐 롯데금융그룹을 금융그룹 감독대상에서 제외 결정하였고, 12월 18일 롯데카드(주)에 통보하였습니다.
- 금융위와 금감원은 6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금융그룹감독 시범 운영을 지속할 예정이며,
 - * '교보', 'DB',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 내년도 모범규준 연장시 금융그룹 감독대상을 다시 확정할 계획입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제2조(정의) 이 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금융그룹”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 내에 금융업을 영위하는 2 이상의 금융회사가 소속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들로 구성된 집단을 말한다.

4. “복합금융그룹”이란 다음 각 목 중 2 이상의 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을 말한다.

가. 다음 각 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여수신업”이라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가 영위하는 업무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영위하는 업무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

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가 영위하는 업무에 한정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이하 “금융투자업”이라 한다)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이하 “보험업”이라 한다)

□ 제4조(감독대상의 지정)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한다.

1. 복합금융그룹에 해당할 것

2. 금융그룹에 속하는 금융회사들의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일 것

3. 금융그룹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금융회사가 1개 이상 소속되어 있을 것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이 감독대상으로 지정된 이후 제1항제2호의 금액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해당 금융그룹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로부터 3년간은 해당 금액 기준을 4조원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금융그룹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대표회사의 신청에 따라 해당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